

중남미연구소 HK+사업단 운영규정

규정번호 : 19-1
제정일자 : 2019.5.15.
개정일자 : 2021.4.25.
개정일자 : 2022.4.30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(Humanities Korea Plus) 지원사업(이하 'HK+사업'이라 한다)에 선정된 본 사업단의 명칭은 중남미연구소 HK+사업단(이하 'HK+사업단'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 (소재) 본 사업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「인문한국플러스(HK+)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(2019.10.16.)(이하 '한국연구재단 HK+사업 규칙'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본 연구소의 HK+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정의) 본 사업단이 추진하는 HK+사업은 「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, 라틴아메리카: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」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말한다.

제5조 (기능) 본 규정은 HK+사업의 최종 목표인 '세계적 수준의 중남미연구 거점연구소' 구축을 위해 HK+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의 연구 활동 및 사업추진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.

제2장 조직

제6조 (구성)

- ① 본 사업단은 'HK+사업 집행위원회'를 통해 운영된다.
- ② HK+사업 수행을 위한 상설기구로 '고충처리 소위원회', '출판위원회'를 설치, 운영한다.
- ③ HK+사업 수행을 위한 상설, 비상설기구의 설치, 변경, 폐지는 'HK+사업 집행위원회'의 심의, 의결을 거친다.

제7조 (중남미연구소 운영위원회)

- ① 중남미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소장(사업단장)이 위원장을 맡는다.
- ② 'HK+사업단장 선임'과 'HK교수 초빙'을 심의, 의결한다.
- ③ HK교수 초빙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.

제8조 (HK+사업 집행위원회)

- ① HK+사업 집행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전임교원, HK 교수, 외부 전문가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* HK+사업단 규정 개정
 - * HK+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설기구인 'HK 연구교수 인사위원회', '자체감사위원회', '생태문명 융합연구위원회(EC-CRC)'의 기능
 - *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, 의결
 - * HK+ 사업 예산의 심의, 의결
 - * HK 연구교수 채용
 - * HK 연구교수의 근태관리, 재임용, 심의, 의결
 - * HK+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타 사안 심의, 의결

제9조 (고충처리 소위원회)

- ① HK+사업 집행위원회를 통해 위원장 1인을 선임하며 위원 선임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에게

일임한다.

- ② 사업단 내 연구보조원,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③ 관련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한 사업 종료시점까지 보존한다.
- ④ 명확한 법률, 규정 위반 사안의 경우 본 대학교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한다.

제10조 (출판위원회)

- ① HK+사업 집행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은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② 사업단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기획, 심의, 기타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단행본의 경우 출판위원회의 사사표기 승인을 받아야 사업단 공식 연구업적으로 등록된다.

제11조 (HK 연구교수 인사위원회)

- ① HK 연구교수 초빙 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.
- ② HK+사업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다.
단,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차 면접심사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는다.

제12조(자체감사위원회)

- ① 자체 감사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.
- ② HK+사업 집행위원회를 통해 사업단 외부 인사 중 위원장 1인을 선임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.

제3장 연구 인력

제13조 (구성) 본 HK+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다.

- ① 사업단장(연구책임자)
- ② 일반연구원
- ③ HK교수

- ④ HK연구교수
- ⑤ 연구보조원
- ⑥ 전담행정직원

제14조 (사업단장)

- ① 사업단장은 중남미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.
- ② 사업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HK+사업을 주도해 나간다.
- ③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은 한국연구재단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)에 따른다.

제15조 (일반연구원) 대학의 학과 소속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전문가로서 연구의 자문 및 공동연구에 참여한다.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)에 따른다.

제16조 (HK교수, HK연구교수) HK교수와 HK연구교수 관련 사항은 각각 본 규정 4장과 5장에 의거한다.

제17조 (연구보조원) 학부, 석사과정,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본 사업단의 연구를 보조한다. 기타 제반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에 따른다.

제18조 (전담행정직원) 본 대학교의 정식직원으로서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한다. 기타 제반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HK교수

제19조 (임용) HK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 및 본 대학교의 「HK교원인사 규정」에 따라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 (대우) HK교수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본 대학교의 동일직급 전임교원에 준하는

대우를 받는다. 인사사항은 본 대학교의 「HK교원 인사규정」 및 「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
제21조 (복무)

- ① HK교수는 소속연구소에 상근하며 HK+사업에 전념하여야 하고 외부기관에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.
- ② HK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.
- ③ HK교수는 주당 3시간 이내 강의할 수 있으며 연구 아젠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.
- ④ HK교수의 강의는 교내외를 통합하여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팀 티칭 교과목의 경우 강의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제5장 HK연구교수

제22조(임용)

- ① HK연구교수의 채용은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HK연구교수의 채용은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에 의거하여 사업단 자체 규정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23조(대우)

-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과 본 대학교 내규에 따른다.
- ② 재임용, 복무,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.

제24조(재임용)

- ① 소요기간: 최초 임용 후 1년마다 재임용한다.

② 재임용 심사기준은 다음 <표>와 같다.

<표1> HK연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

구분	항목(만점)	등급	평가	심사방법 및 세부기준
HK+ 연구실적 (30점)	연구수행 (30점)	인문·사회·자연계		*연구실적 A&HCI, SSCI, SCOPUS 포함 등재지 논문 2편 이상(단행본 포함) A 등재지 논문 2편 이상(단행본 포함) B 등재지 논문 1편 이상(단행본 포함) C 등재후보지 포함 논문 1편 이상(단행본 포함) D ※ 논문은 주저자 기준임 ※ 단행본은 사업단 인정 여부는 사업단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함.- ※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. ※ 연구실적은 본 사업과 부합하는 학문 분야만 인정함. ※ 공동연구인정비율 등 기타 제반사항은 본대학교 「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」을 준용함.
		A B C D		
HK+ 사업수행 실적 (70점)	HK+사업성실성 (20점)	A B C D		
	HK+사업성과 (20점)	A B C D		
	동료평가 (30점)	A B C D		
계	100점			

③ 재임용 평가시 연구점수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동 계약 해지된다.

④ (가산점)

사업단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HK+사업집행위원회가 인정할 시 재임용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5조(근무)

①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에 따라 HK연구교수는 연구소에 상근하며 HK+사업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.

② HK연구교수의 외부기관에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사업단장 승인 하에 외부기관에 출강할 경우 겸직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한다.

③ HK연구교수는 HK+사업단이 소재한 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로 주 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. 단,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출근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HK연구교수는 1년 중 15일의 연차휴가로 신청할 수 있다. 단, 휴가일정과 기간은 사전에 사업단장과 협의,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6조(강의)

① HK연구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.

② HK연구교수는 교내외를 통합하여 주당 4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HK+사업단이 소재한 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강의 시 사업단장 승인 하에 6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.

③ 연구 아젠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추가 허용할 수 있다.

④ 1과목 3시간 연속 강의의 경우 2시간 강의로 인정된다.

⑤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 강의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제27조(인센티브)

① HK연구교수에게는 한국연구재단의 「HK+사업 규칙」(2019.10.16.)에 따라 보수의 10% 이내에서 인

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인센티브 지급 평가는 HK 집행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단장이 결정한다.

③ 근무기간(12개월)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HK연구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HK연구교수가 HK교수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HK+사업집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규정 개정 및 준용

제28조 (규정 개정) 본 규정은 사업단장이 연구소 집행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29조 (제 규정의 제정) 본 HK+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칙 HK+사업 집행위원회'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정한다.

제30조 (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1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2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3)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